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학위 논문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이 종 성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후보장패널조사의 5차 자료(2013년 수집)와 6차 자료(2015년 수집)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처치집단은 기초연금 시행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1949년생으로, 통제집단은 연령 상 수급집단에 가장 인접한 수급예정 집단인 1950년생으로 활용하였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단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후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검증하였다.

우선 단순 이중차이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통제집단에 비하여 처치집단의 총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부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의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식비, 담배,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등은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피복비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가사서비스비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식비, 담배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지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소비지출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피복비와 문화생활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생활비, 피복비는 여가 및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특성이 문화생활비, 피복비 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은 소비지출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항목들은 소비지출 내에서의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변화가 총 소비지출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소득탄력성이 높은 일부 소비지출부터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초연금의 월 10~20만원의 낮은 급여 수준, 시행 후 6개월 자료라는 조사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지출 항목에 10분위 소득과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식비, 피복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경제학적 해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생활비로 표현되는 소비지출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실제 소비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 항목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외에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비는 10분위 소득 외 미취업상태이고 남성일수록 식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담배비는 근로활동에 종사할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담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넷째, 주거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자가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피복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거주 지역 중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 거주할수록 피복비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섯째, 문화생활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일곱째, 교통통신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대도시가 아닌 중소지역일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덟째, 보건의료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여성일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아홉째, 가사서비스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독거보다는 부부, 동거가구 등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유형에 해당할수록, 남성일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외에 교육보육비는 10분위 소득 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외에 공적이전소득, 만성질환, 성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세부 소비지출 항목별로 개념적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소비지출 항목별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문화비 및 피복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지출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의 조사시점 상의 한계로 인해 기초연금 시행 이후 6개월의 정책효과만 반영되었으며, 분석자료 구성의 한계로 소비지출 변수를 균등화 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미비로 세부적인 자산 기준, 소득 공제 등을 통제집단의 구성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어 : 기초연금, 소비지출, 공적이전소득, 문화생활비, 피복비, 이
중차이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

학번 : 2008-23386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10
2. 기초연금과 소비지출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4
2. 노인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21
제3장 연구의 설계	25
제1절 연구가설 및 변수의 설정	25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25
2. 변수설정	27
3. 연구의 분석틀	36
제2절 분석모형의 구성	36
1. 분석자료	36
2. 분석대상	38
3. 분석방법	39
4. 분석모형	42

제4장 분석결과	43
제1절 기술통계 분석	43
1. 인구학적 특성 및 영향요인 관련 기술통계	43
2. 소득구조의 변화	53
3. 소비지출액의 변화	58
제2절 소비지출의 변화	61
1. 이중차이 분석결과	61
2.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64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5
1. 연구의 의의	75
2. 연구의 한계	76
참고문헌	79
부록 : 가중치 부여 이전의 회귀분석 결과	84
Abstract	86

〈표 차례〉

[표 1 - 기초노령연금 상의 노인 단독가구 급여수준]	7
--	---

[표 2 - 기초연금 상의 노인 단독가구 급여수준]	9
[표 3 - 기초노령연금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들]	17
[표 4 - 기초연금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들]	20
[표 5 - 노인의 소비지출에 관한 주요 연구들]	24
[표 6 - 변수설정]	28
[표 7 - 소비지출 항목별 통제변수]	35
[표 8 - 이중차이분석 모형]	40
[표 9 - 이중차이 회귀분석 모형]	41
[표 10 - 경제적 요인 및 인지적 요인]	46
[표 11 - 주거요인]	49
[표 12 - 건강요인]	51
[표 13 - 인구사회적 요인]	52
[표 14 - 소득구조의 변화]	54
[표 15 - 이전소득의 변화]	57
[표 16 - 소비지출액의 변화]	59
[표 17 - 총 소비지출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61
[표 18 - 세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63
[표 19 -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1/2)]	66
[표 20 -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2/2)]	67
[표 21 - 가중치 부여 이전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1/2)]	84
[표 22 - 가중치 부여 이전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2/2)]	85

〈그림 차례〉

[그림 1 - 연구의 분석틀]	36
[그림 2 - 분석모형]	42

제1장 서론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 또한 49.6%로 세계 최고수준이다(OECD, 2015). 산업화 속도에 비해 늦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부분적립방식이라는 재정 운용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소위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가입자 기준 평균 소득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고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시행 당시부터 2014년까지 평균소득의 5%인 10만원을 급여상한으로 정함에 따라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강성호·최옥금, 2010; 장현주, 2013).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결국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를 촉발시켰고,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기초연금은 당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A값)의 10%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정책대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기초노령연금에 비하여 급여를 2배 정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약 20만원, 2인이 모두 수급하는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32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왔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기초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 해당하므로 최저소득 보장과 적정한 생활수준 보장 달성이라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기초(노령)연금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빈곤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는 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친 미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따라서 현금급여제도인 기초연금의 산출 지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보다는 노인의 소득, 자산, 미래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기초연금의 성과(outcome)인 소비지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석상훈, 2010). 단순한 소득증가에 비하여 소비지출의 경우 제도가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확보한 노인의 소비지출 변화는 최근 복지지출의 재정적 선순환효과 논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국비 7조원, 지방비 3조원으로 연간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급자, 특히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안정성이 보장되어 소비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노인의 소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어 소비지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견해는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래를 위한 자산축적의 필요가 낮기 때문에 소득 증가가 대부분 즉시적인 소비로 이어진다는

고 본다(Ando & Modigliani, 1963). 반면, 기초연금의 확대는 노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의 특성 상 현금급여 지급에 의한 소득증가가 그만큼의 소비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외생적인 소득의 변화에 의하여 수급자 행태 변화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소비지출 변화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간 기초연금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들은 분석대상이 되는 소비지출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을 경시하였거나, 자료구성의 특성 상 중단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 차이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적정 생활수준 보장이란 소득보장정책으로써의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성, 나아가 복지지출의 재정적 효과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의의

소득보장이란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단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는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그러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김태성·김진수, 2013). 이는 크게 국가에 의한 공적소득보장과 주로 자녀 등의 가족, 친족, 자선기관 등에 의한 사적소득보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공적소득보장은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세금감면 혜택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고령이라는 소득상실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공적연금제도(pension scheme)와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scheme), 일부 국가에서는 노령수당제도(the aged allowance scheme)의 형태로 존재한다(석재은·김태완, 2000). 이러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공통적인 목표는 크게 1)최저소득 보장과 2)적정한 생활수준 보장으로 볼 수 있다. ILO(1997)는 사회구성원이 빈곤 위험, 노령, 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정책목표로 보았다. 유사

한 맥락에서 OECD(2011)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에 최저소득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구구조의 변화, 정책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편과정에서 공적노후보장제도는 일정한 형태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원종욱 외, 2015). 일반적으로는 기본소득보장 목적인 1층 연금과 보험방식의 소득보장 목적인 2층 연금(earning-related pension)으로 구성된다(OECD, 2013; 원종욱 외, 2015). 이들은 공적연금으로써 제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기초보장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1층 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낮은 급여액 수준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도입 초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전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기초연금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복지제도는 1991년에 도입된 ‘노령수당’이다¹⁾. 사회발전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특성 상 주로 자녀, 가족 등의 사적관계망에 의존하여 빈곤완화와 최저생활수준 보장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노후소득 보장을 제도적 차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1991년 노령수당제도가

1) 1980년 노인복지법을 통해 경로우대제도를 도입하여,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철도, 시외버스, 목욕시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50% 할인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도입되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1994년을 기준으로 월 15,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윤찬영, 1996). 다만, 노인 보호시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 보다는 공공부조에 가깝다고 보는 반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무기여형인 ‘경로연금’으로 개편되어 1998년 시행되었다²⁾.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99년 기준 575,000명의 노인에게 매월 2~5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고 수급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은 37만원 수준이었다(임용빈, 2016). 수급률은 이전의 노령수당이 전체 노인인구의 10% 내외였던 것에 비해 18%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정기준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중복수급 등의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2007년 폐지 당시에는 수급률이 1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급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곧 기초노령연금 제도 마련의 기본방향이 되었다³⁾.

2) 199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소득 노인들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만 80~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장수수당제도가 존재하였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고, 지방선거 전후로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3)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과 개요

심화되는 노인빈곤의 완화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축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에서 시행되었다(강성호·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였다. 2008년 1월 제도 도입 시에는 70세 이상, 하위 60%의 노인으로 수급대상자를 정하였으나, 2008년 8월부터 65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70%로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급여수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노인 단독가구는 최고 94,800원, 부부가구는 최고 151,400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표적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 기초노령연금 상의 노인 단독가구 급여수준]

인정액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미만
	94,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존재하여 정착된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임용빈, 2016).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한 의미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보기에는 노인빈곤율 완화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강성호·최옥금, 2010; 김재호·정주연, 2012; 장현주, 2013). 왜냐하면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이 2014년 기준 약 9.7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주로 노인빈곤 감소나 불평등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4) 기초연금의 도입배경과 개요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이 새롭게 도입된 배경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이러한 제도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이유도 다분히 작용하였다(장현주, 2015: 420).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49.6%에 이르는 노인 빈곤률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18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당시 출마한 대선후보들의 주요한 대선공약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공약이 일부 수정된 형태이긴 하지만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노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나, 급여액을 이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기준의 틀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다만,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월액(A값)의 10% 수

준으로 상향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에는 월 20만원, 2인 가구에는 월 32만원을 지급하여 약 2배에 가까운 수급액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⁴⁾

[표 2 - 기초연금 상의 노인 단독가구 급여수준]

소득 인정액	㉜ 미만	69만원 이상 ~71만원 미만	71만원 이상 ~73만원 미만	73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연금액	200,000만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 인정액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미만
연금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4b)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삭감하는 기준을 추가하였다⁵⁾.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30~4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 산식에 따른 급여액과 50만원 중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차감한 급여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4b). 미래세대 재정 부담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

4) 실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은 가구 분류(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 반영),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A급여액,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고려하므로 개념적 이해를 위하여 감액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예를 제시하였다.

5) 기초노령연금 제도 역시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급여액을 삭감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이 삭감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구간이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결국 기초연금 전액 지급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신성희, 2016).

금과의 연계는 도입 당시 국민연금 안정성 논란을 야기하였으나, 법률에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여 논란을 잠재우면서 2014년 6월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부부 동시 수급의 경우 1인당 16만원)을 받는 노인들이 93.1%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즉,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대부분의 노인 가구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성이 약화되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세대 노인들에게는 가시적인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증가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인 적정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기초연금과 소비지출

1) 공적이전소득과 소비지출의 관계

전통적으로 소득(income)은 소비(consump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이전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를 활용해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정운영·정세은, 2010). 먼저 Keynes의 절대소득가설(absolute-income hypothesis)이 있다. 이 가설은 현재의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또한 Friedman의 항

상소득가설(permanent-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소득이며, 항상소득은 안정성(stability)이 높고 예측 가능하며 현재의 효용 증진을 위한 소비지출에 사용된다(Friedman, 1957). 이러한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인 기초(노령)연금 소득 역시 노년기에 주어지는 항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서영빈·송헌재, 2015: 134). 소득과 소비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된 항상소득이 소비지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면(김대일, 2015: 39),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비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의 소비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년층은 비교적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저축보다는 소비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김현수·석상훈, 2013: 137). 그러므로 기초연금의 평가를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원천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소득의 구성이 소비지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운영·정세은, 2010). 노인 가구 중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 이전소득은 크게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소득안정성이 달라지고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모두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소득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 원천이기는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안정적인 소득원천임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등을 통하여 충당되는 소득원천이라는 점에서 소득을 이전하는 주체에 기인한

불안정성이 내포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이전소득은 성격상 그 자체에 불안정성(instability)과 휘발성(volatility)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금현섭·백승주, 2014: 153-158).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금현섭·백승주, 2014: 146-147).

기초연금만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되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안정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 가구는 공적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고 자녀로부터의 용돈, 즉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손병돈, 2009; 김진욱, 2011).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유사하게 정기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사적이전소득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매우 안정적인 소득원천으로 작용한다. 결국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는 비수급 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인가구의 소비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금현섭·백승주, 2014: 169-170).

2) 노인가구와 소비지출

소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은 경기변동이나 실직 등에 의한 변동성이 높지만, 이에 비하여 소비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소비를 해야만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지된다(Friedman, 1957). 소득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불안정하

기 때문에 정책의 평가나 가구의 복지를 측정하는 데 소비가 더 적절한 지표일 수 있는 것이다(여유진, 2002). 즉,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이 해당가구의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강성진·권혁진, 2006: 75). 이러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최저생계비’이다.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비를 기준으로 한다(김환준, 2006: 288). 즉,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김교성·김성욱·이정면·노혜진, 2008: 299).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확인한다면 이들의 소비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생애주기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소비상의 두 가지 큰 변화를 경험한다. 첫째, 근로소득의 중단되어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액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소비수준이 하락하게 된다(백학영, 2010). 둘째, 노년층의 경우 의료욕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신성희, 2016). 이와 같은 변화는 모두 노인가구의 소비에 부담이 되는데, 저축과 같은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필요한 소비지출을 보충하며, 그렇지 않은 노인 가구는 비교적 조정이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줄여 필요한 소비지출을 충당한다(정영숙, 2000).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의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특히 노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미래를 위한 자산축적의 필요가 낮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소득 증가는 대부분 소비로 이어진다(Ando & Modigliani,

1963). 소득의 감소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된다면 반대의 상황에서는 소비의 확대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 시행을 통한 노인가구의 소득 증가는 가구의 소비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손상희, 1993; 정운영·정세은, 2010: 22).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최근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혹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가지는 함의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확보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는 최근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지출의 재정적 선순환효과의 선결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가 장수수당 등의 제도 도입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경아(2008)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996~2006년 간 노인 가구의 소득 중에서 공적연금,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해왔으며, 이로 인해 노인 가구의 빈곤률이 낮아졌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수영·이강훈(2009)은 성별, 연령, 노동력 등 공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이 노인 가구의 빈곤 감소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분석하였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출현하였다. 이는 주로 1)빈곤 완화, 2)주관적 만족, 3)소비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검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전소득 지급에 따른 귀결로 볼 수 있다(강성호·최옥금, 2010; 석상훈, 2010; 유란희 외, 2012; 장현주, 2013). 김재호·정주연(2012)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약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강성호·최옥금(2010)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효과 및 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으로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감소하여 탈빈곤의 기회가 증가하였으나 급여수준이 낮아 차상위계층으로의 이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석재은(2010)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소득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빈곤율의 경감효과는 최저생계비의 100-150%계층에서 가장 큰 반면, 빈곤갭 경감효과는 최저생계비의 200-300%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정책효과를 개인의 경제적 만족도로 측정한 강소랑·문상호(2013)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라 경제상태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에서 0.8점의 상승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노인 가구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량적 비교가 어렵고, 특히 변동 폭이 작은 주관적 측정점수 상승을 보완하기 위한 엄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적연금을 분석한 금현섭·백승주(2014)의 연구는 소득증가를 소득안정성으로 측정하고,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이 이들 가구의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완화 효과와 이를 통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적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개인의 삶과 사회에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한다. 정경희 외(2009)에서는 기초노령연금 Database와 한국복지패널자료, 자체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전체 소득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경로연금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수급자들은 현실적으로 10-15만원으로 수급액의 상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과 인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소비, 저축 등의 변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 연구도 있다. 박정수·김준기(2015)는 회귀단절모형으로 이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하나, 생활비 지출에서는 음(negative)의 변화가 나타나 오히려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회귀단절분석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연령기준이 65세이지만, 65세 노인의 수급률이 낮아서 연령별 집단 간의 소

득단절을 생성할 만큼 충분한 차이를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기초노령연금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들]

	지표	주요 결과
(2010)	빈곤율	전반적으로 빈곤완화효과가 낮으나, 여성독거 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효과적
김재호·정주연(2012)	빈곤율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음
강성호·최옥금(2010)	빈곤갭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감소하여 빈곤완화효과가 있음
석재은(2010)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경감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 빈곤갭 경감효과는 고소득층에서 높음
장현주(2013)	빈곤갭	빈곤을 완화시키나,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큼
강소량·문상호(2013)	경제상태만족도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 증가
금현섭·백승주(2014)	삶의 만족도, 소득안정화	공적연금은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노인가구의 소득안정화에 기여
정경희 외 (2009)	수급자들의 인식, 소득 등	급여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고, 전체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큼
박정수·김준기(2015)	소비, 소득	소득 감소를 완화하나, 생활비 지출은 감소

2) 기초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기초연금

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크게 1)소득변화와 소득불평등, 2)소비지출 변화, 3)소비지출 유형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득변화와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로 이정화·문상호(2014)는 기초연금이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비수급집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수급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임완섭(2016)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산출하였는데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은영(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 이후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도 함께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변동, 빈곤율 완화와 관련된 연구는 기초연금 제도가 개인의 생활수준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소비지출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2015)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을 주로 식비(40.2%)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한시적인 설문조사만으로는 각 소비항목별로 지출액이 얼마가 늘었고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채정·권혁주(2016)는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2014년)와 10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이 항목별 생활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이승호·구인회·손병돈(2016)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확대 이후는 수급가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노인의 연령 집단에 따라서, 주거비, 오락·문화비, 통신비 또는 의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표본이 조사회차마다 1/3씩 교체되므로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패널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탁현우(2016)에 따르면 주류 및 담배와 가정용품의 유의미한 지출증가 일부 소득분위에서 발견되었고, 식료품과 음식 및 숙박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소비지출 항목별로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소비지출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지출유형에 관한 연구로 신성희(2016)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시행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제도 시행 이전(2007, 2013년)에는 ‘식료품비 중심형’, ‘의료비 중심형’, ‘주거비 중심형’, ‘기본지출 중심형’의 군집이 나타났으나, 제도 시행 이후(2009, 2015년)에는 기본지출 중심형이 관찰되지 않고 식료품비 중심형과 의료비 중심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년도 분석방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패널데이터가 아닌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종단분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지출 및 유형변화에 있어서 비수급자 집단의 변화양상을 동시에 분석하지 않아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기초연금 관련 연구는 주로 빈곤완화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연금이 개별 노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정책대상에게 미치고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들은 소비지출항목에 따라 결과가 불일치하거나,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 구성의 문제로 중단분석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소비지출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을 경시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 기초연금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들]

	지표	결과
문상호(2014)	소득	공적이전소득 비수급집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남
임완섭(2016)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크나,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감소 추이가 완화되어 나타남
이은영(2015)	소득, 소비지출	저소득층에서 소득, 소비가 크게 증가
보건복지부(2015)	소비지출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이채정·권혁주(2016)	소비지출	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
이승호·구인화·손병돈(2016)	소비지출, 소득	주거비, 광열수도비 지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탁현우(2016)	소비지출, 소득	주류 및 담배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나, 식료품 지출은 오히려 감소
신성희(2016)	소비지출유형	시행 전에는 ‘식료품비 중심형’, ‘의료비 중심형’, ‘주거비 중심형’, ‘기본지출 중심형’이 나타났으나, 시행 이후에는 기본지출 중심형이 관찰되지 않음

2. 노인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1)소비지출 영향 요인 분석, 2)소비불평등 분석, 3)소비지출 항목 비교 및 유형화로 구분할 수 있다(김학주, 2006; 백학영, 2010; 이소정 외, 2008; 이소정, 2009; 정운영·정세은, 2010; 최옥금, 2011).

우선,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운경(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가구가 독거가구에 비해 모든 지출항목에서 더욱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그 크기는 외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순서로 나타났다. 장현주(2013)는 LIS 소득정의에 따라 소득원을 분리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을 감소를 분석하였는데, 독거가구 등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학영(2010)에 의하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경우에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가구 중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비불평등에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수준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한다(이소정, 2009; 정운영·정세은, 2010; 백학영, 2010). 이소정(2009)은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을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소비지출과 식료품비와 같은 필수소비에 대한 소비지출의 불평등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 차량유지비 등 비필수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정운영·정세은(2010)에 따르면 저소득 및 고소득 노인가구 해당 여부에 따라 두 집단의 총 지출액, 총 소비지출액, 총 비소비지출액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 노인가구는 비빈곤 노인가구보다 필수재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노인가구는 비빈곤 노인가구보다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의료비 등의 지출 비중이 높고, 피복비, 교통통신비, 여가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낮았다(백학영, 2010; 정운영·정세은, 2010; 최옥금, 2011). 양세정·성영애(1997)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보다 총 소비지출액이 낮음에도 주거비, 수도광열비, 의료비에 대한 지출액은 높은 반면,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복신발비, 교통비에 대한 지출액은 낮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소비욕구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항목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유형화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대상과 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소비지출의 유형화는 현재까지 빈곤가구 혹은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백학영, 2010; 강성호·임병인, 2011; 최옥금, 2011; 이성림, 2015). 백학영(2010)은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관계지출형, 식비지출형의 6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빈곤 노인가구는 주로 식비지출형, 주거지출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비빈곤 노인가구는 교육지출형, 여가지출형으로 주로 분류되었다. 이는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주로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소비지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소비지출은 모든 노인 가구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의 특성이 소비지출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최옥금(2011)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분류하여 소비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의료지출 중심형, 주거지출 중심형,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 등 필수재 중심의 기본생활 중심형, 관계지출 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가구주가 교육수준이 높고, 남성일 경우 관계지출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의료지출 중심형은 의료비로 인해 다른 영역에 대한 지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연령대,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의료비에 집중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군집, 주거비에 집중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군집이 관찰되었다. 즉, 기본생활비용, 의료비, 주거비를 중심으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가 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본생활비용, 주거비, 의료비에 집중적인 소비를 하는 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유형 관련 선행 연구들은 소비지출을 복지수준 측정의 지표로 활용했다기보다는 노인의 소비지출의 특성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 노인의 소비지출에 관한 주요 연구들]

	지표	결과
(2003)	소비지출 영향요인	부부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지출규모가 큼
장현주(2010)	소비지출 영향요인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지출 변화가 큼
이소정(2009)	소비지출 불평등	식료품비 등 필수소비에 대한 불평등은 감소하나, 비필수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
정운영·정세은(2010)	소비지출 불평등	소득보다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산 및 부동산 규모가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침
양세정·성영애(1997)	소비지출 항목	식료품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 의료비의 지출액이 많으나, 피복신발비, 교통비에 대한 지출액은 낮음
백학영(2010)	·소비지출 영향요인 ·소비지출 유형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남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관계지출형, 식비지출형의 6개로 유형화
최옥금(2011)	소비지출 유형화	의료지출중심형, 주거지출중심형, 기본생활지출중심형, 관계지출중심형의 4개로 유형화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가설 및 변수의 설정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하여 2배 인상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이전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기초연금 급여가 실제 소비지출로 연결되어 복지지출의 재정적인 선순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과 소비지출 효과가 미약함에도 정치·동기에서 도입되어 오히려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급자인 노인의 소비지출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소비지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노인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복지는 소득이나 자산의 존재 그 자체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이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소비지출의 변화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지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발현되므로 이는 정책대상자의 욕구의 충족 또는 결핍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소비지출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을 경시하였거나 개별 소비지출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

였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별 소비지출 항목별로 상응하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하므로 소비지출의 변화를 엄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수준을 상향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임완섭, 2015; 이채정·권혁주, 2016) 등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소비항목을 몇 개로 단순화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별로 분석하고, 항목별 개념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영향 요인을 선정 및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노인의 소비지출액 증가를 총 소비지출 이외에도 세부 하위 소비지출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수요자인 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지출은 하위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소비항목별 지출액 변화에 대한 분석은 잠재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활필수품과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다면,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 서비스 직접 제공 등 정책 확대 및 제공방식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설에서 언급한 소비지출액을 총 소비지출액과 더불어 식비, 담배비, 주거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등 10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 기초연금의 도입은 수급자의 소비지출액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2. 변수설정

1) 종속변수 : 소비지출액

‘소비지출액’은 총 소비지출액 및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1인 가구 균등화지수⁶⁾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일부 선행연구는 고정적인 소비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의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다만, 이 경우 다양한 개인 단위 통제변수를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후보장패널에서 가구 단위로 표집된 소비지출 변수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는 과정을 통해 일종의 개인 소비지출로 의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차이 분석 시에는 소비지출액의 편차를 고려하여 이를 자연로그화하여 분석하였다.

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소비지출항목을 식비, 담배주류비(이하 담배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 및 가구구입비(이하 가사서비스비), 교육비, 보육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이하 기타 소비지출)의 12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낮은 광열수도비는 소비지출의 성격이 동일한 주거비에 포함하여 분석하고, 역시 비중이 낮은 교육비와 보육비는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식비, 담배비, 주거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의 총 10가지 하위유형과 총 소비지출을 함께 분석한다.

또한 본 패널조사에서는 조사시점 상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응답시점 기준 ‘작년 한해’의 소비지출,

6) 균등화 지수(square root scale)란 OECD에서 제시하는 가구규모별 균등화지수 중 하나로, “가구소비지출/ $\sqrt{\text{가구원수}}$ ”을 의미한다. 즉, 가구원 수로 소비를 균등화하여 가구원 1인당 소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소득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년도의 소비지출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활물가 수준(CPI)을 반영하여 6차 자료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 변수설정]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특성	
변수	시기더미	기초연금 도입 전=0, 기초연금 도입 후=1	명목	
	집단더미	기초연금 미수급=0, 기초연금 수급=1	명목	
	더미 간 상호작용항	-	명목	
종속변수	소비지출액	균등화 소비 = $\ln(\text{가구소비지출} / \sqrt{\text{구원주}})$	연속	
통제변수	경제요인	10분위 소득	해당 소득분위별 숫자 부여(1~10)	범주
		근로여부	1: 취업, 0: 미취업	명목
		공적이전소득액	기초연금 수급액을 제외한 균등화 공적이전소득(자연로그)	연속
	인지요인	적정노후생활비	적정 노후생활비용(자연로그)	연속
	주거요인	주거형태	1: 자가, 2: 전세, 3: 월세	명목
		가구유형	1: 독거가구, 2: 부부가구, 3: 동거가구	명목
		거주지역	1: 서울, 2: 광역시, 3: 기타지역	명목
	건강요인	만성질환	1: 있음, 0:없음	명목
		장애	1: 있음, 0:없음	명목
		심리적 건강	CES-D 척도	연속
	인구사회요인	성별	1: 남성, 2: 여성	명목
		교육수준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이상	명목

2) 독립변수 : 기초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은 독립변수로 시기더미, 집단더미, 시기더미와 집단 더미의 상호작용항이 이에 해당한다. 시기더미는 기초연금 도입 전인 2013년=0, 기초연금 도입 후인 2015년=1로 코딩된 더미변수로 투입할 예정이며, 집단변수는 기초연금 미수급집단=0, 기초연금 수급집단=1로 코딩된 변수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중차이를 감안한 기초연금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한다.

3) 통제변수 : 경제, 인지, 주거, 건강, 인구사회 요인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주거 요인, 건강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 건강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세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일부 소비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서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영숙, 2000; 이소정, 2009; 백학영, 2010; 최옥금,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비지출 관련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영향 변수를 참고하는 동시에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개념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선행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인 경제적 요인 중 10분위 소득, 인지적 요인인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 건강 요인 중 심리적 건강 수

준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세한 통제변수별 조작적 정의 및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요인 : 10분위 소득, 공적이전소득액, 근로여부

경제적 요인에 포함되는 통제변수는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10분위 소득, 공적이전소득액, 근로여부 총 3개이다.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은 기존의 경제학 모형에서도 소비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0분위 소득은 해당 가구의 소득을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소득액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소비지출은 고정지출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소비액보다는 구간(cluster)별로 소비지출 양상 차이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0구간으로 구분되는 10분위 소득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상소득 기준 균등화 10분위별 소득을 기준으로 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 6차 자료 각각 월 소득을 10분위 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이 때,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총 경상소득액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10분위 소득은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소비지출 항목 분석에 포함하였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액은 연속변수로 월 가구 공적이전소득액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이를 가구원수로 균등화하고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적이전소득액은 총 소득, 10분위 소득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관계수 또한 0.3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적이전소득도 안정적인 소득원천의 하나로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소비지출 항목 분석에 포함하였다.

셋째, 근로여부는 취업자의 경우는 1, 미취업자의 경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근로여부는 총 소비지출, 식비, 담배비,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분석에 활용한다. 고용주의 식사 제공(식비), 근로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담배비), 출퇴근으로 인한 이동거리 및 업무연락 빈도 증가(교통통신비), 근로시간의 증가와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대체비용의 발생(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인지적 요인 : 적정 노후생활비

인지적 요인으로는 적정 노후생활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노후조사패널 조사표에 의하면 적정 노후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노후생활비와 비교하였을 때, 이는 소비지출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이상적인 목표 수준을 반영하므로 일종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소비지출성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측면의 소비지출성향인 적정 노후생활비는 실제 소비지출과 밀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소비지출 항목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주거 요인 :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주거 요인에 포함되는 통제변수는 분석대상의 주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등 총 3개이다. 첫째,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 형태를 의미하며 주거비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성영애, 2013).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여 주로 주거비에 편중된 소비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가는 1, 전세는 2, 월세는 3으로 명목변수의 형태로 활용하였으며, 상기 이유로 총 소비지출과 주거비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가구유형은 크게 노인독거, 노인부부, 동거가족의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본다. 여유진(2003) 등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1인 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가구유형별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임완섭(2016)의 기준을 재구성하여 ‘독거가구’는 가구원 수 1인 가구로 1, ‘부부가구’는 가구원 수 2인인 부부로 구성된 가구로 2, ‘동거가족’은 그 외의 경우로 부모, 자녀 등 동거가족과 거주하는 가구로 3으로 정의하였다. 가구원 수 증가로 인한 거주면적, 광열수도비 지출 등의 증가(주거비), 식기구입비 및 세탁비용의 증가(가사서비스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등 가사노동 분담으로 인한 돌봄비용 지출 감소(교육보육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거주지역은 서울의 경우는 1, 광역시인 경우는 2, 그 외의 지역은 3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1에 가까울수록 대도시 지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주택 가격과 제반비용의 차이(주거비), 야외 근로활동(피복비), 편의시설의 분포 및 접근성(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4) 건강 요인 : 만성질환, 장애, 심리적 건강수준

건강 요인에 포함되는 통제변수는 분석대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만성질환, 장애, 심리적 건강수준 등 총 3개이다. 첫째, 만성질환 여부는 해당될 경우에는 1,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만성질환은 특히 의료비에 대한 욕구 및 지출 증가와 관련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이를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실시 및 야외활동 자제(식비 및 피복비, 문화생활비), 의료기관 내원과 진료비용의 발생(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여부는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해당될 경우에는 1,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를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정기검진(보건의료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소비지출과 보건의료비 항목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심리적 건강수준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이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정신과 진료에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Radloff가 개발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CES-D로 측정하였다. 이는 총 2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다)~3점(대부분 그랬다)으로 수집되었으며, 일부 역산 문항을 변환하여 총 6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으며 16점 이상의 경우는 우울증으로 진단된다. 심리적인 불안 해소(담배비), 정신과 진료(보건의료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5) 인구사회적 요인 : 성별, 교육수준

인구사회적 요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성별의 경우는 남성일 경우에 1, 여성일 경우에 2로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일 경우는 1, 초등학교 졸업은 2, 중학교 졸업은 3, 고등학교 졸업은 4, 대학교 졸업 이상은 5로 명목변수로 측정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은 기초적인 특성이므로 모든 소비지출 항목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만,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연령과 가구원 수 등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가구원 수는 관련 변수를 균등화소득으로 변환하면서 이미 간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은 분석모형에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선별할 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별도로 통제변수로 삽입하지 않았다. 개별 소비지출 항목별 통제변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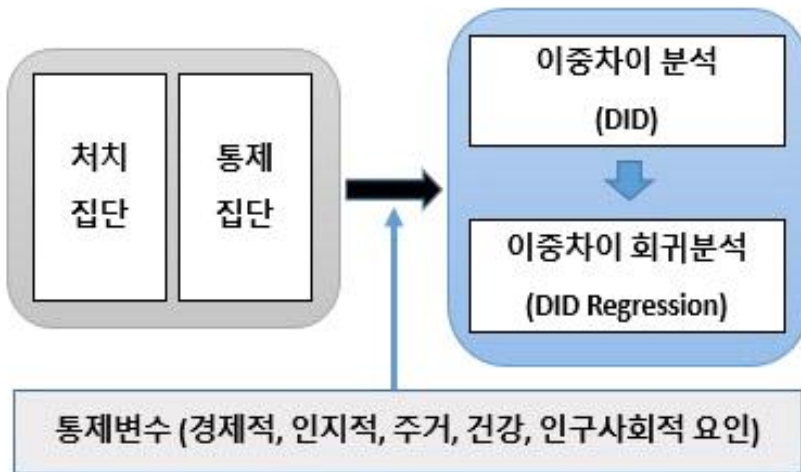
[표 7 - 소비지출 항목별 통제변수]

구분		지출	식비	담배비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	교통통신	보건의료	가사	교육보육	기타
경제	10분위 소득	○	○	○	○	○	○	○	○	○	○	○
	공적이전	○	○	○	○	○	○	○	○	○	○	○
	근로	○	○	○	-	-	-	○	-	○	○	-
인지	적정 생활비	○	○	○	○	○	○	○	○	○	○	○
주거	주거 형태	○	-	-	○	-	-	-	-	-	-	-
	가구 유형	○	-	-	○	-	-	-	-	○	○	○
	거주 지역	○	-	-	○	○	○	○	-	○	○	○
건강	만성 질환	○	○	-	-	○	○	○	○	-	-	○
	장애	○	-	-	-	-	-	-	○	-	-	-
	심리 건강	○	-	○	-	-	-	-	○	-	-	-
인구통계	성별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3.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 연구의 분석틀]



제2절 분석모형의 구성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5차 자료(2013년 수집)와 6차 자료(2015년 수집)를 분석하고자 한다⁷⁾.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로 고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노후소득보장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에 조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110가구와 해당 가구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 자료는 자료배포시점으로 인해 베타버전을 활용하였다.

경제상태, 고용상태,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수집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5년 당시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있는 5,110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6차년도(2015년) 자료는 71.9%의 패널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노인의 소비지출액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부 소득정보와 소비항목을 포함하는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가계동향조사는 시계열 자료로 1990년부터 가장 오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나, 패널자료가 아니어서 표본이 조사회차마다 1/3씩 교체되므로 장기적 차원의 분석이 어렵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패널자료로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하나, 저소득 가구가 과잉표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득과 소비지출 이외에도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이출 등의 다양한 소득, 소비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준실험설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료 분석 시 결측값 등으로 인한 표본 수 감소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패널자료에서 개인별로 부과하고 있는 가중치를 활용하여 대표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49년생과 1950년생이다. 처치집단인 1949년생은 6차 자료 수집시점인 2015년 기준 67세(만 66세), 소득 및 소비지출의 측정시점인 2014년 기준 66세(만 65세)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한다⁸⁾. 반면 통제집단인 1950년생은 2015년 기준으로 66세(만 65세)이나 소득 및 소비지출의 측정시점인 2014년 기준 65세(만 64세)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급집단에 가장 인접한 수급예정집단으로 비교집단으로 활용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령 상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가구소득, 직역연금 수급여부를 활용하여 통제집단을 처치집단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첫째, 소득기준으로 하위 70%를 선별하였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노인인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1950년생 중에서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균등화가구소득이 통계청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하였다⁹⁾. 둘째, 직역연금 기준으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제외하였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4b).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나, 본 연구의 처치집단에는 해당사항

8) 처치집단의 경우 생일 도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시행된 6월 이후로 모두 6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9) 통계청의 2012년 소득분배지표에서 2인 가구 기준 균등화 경상소득의 하위 70%인 1,771,177원을 초과하는 표본을 제외하였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통제집단에도 직역연금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예정 집단인 통제집단(96명)과 기초연금 수급집단인 처치집단(43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⁰⁾.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술통계를 통하여 소비지출 등의 전체적인 변화양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소비지출액이 변화하였는지를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실시한 후 이중차이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요인을 통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1) 이중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이중차이분석은 기초연금 수급집단(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않는 수급예정집단(통제집단, control group)을 조직하여 일종의 준실험

10) 가구 소비지출을 균등화하여 일종의 개인소비지출로 의제하여 분석함에 따라 별도의 대상자임에도 동일 가구에 소속될 경우 소비지출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가구에 속하는 대상자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소득 변수 관련 이상점(outlier)에 해당하는 대상자 1명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quasi-experiment)상태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정책의 적용상태 또는 처리(treatment)로 취하고, 기초연금 지급 이전인 2012년(t=0)에서 기초연금 지급 이후인 2014년(t=1)로 이동시 발생하는 기초연금 수급집단 및 기초연금 수급예정 집단의 소비지출액 변화를 산출한다. 정책수혜집단의 정책개입 전후 성과 차이에서 통제된 비교집단의 정책도입 전후 성과차이를 제한 것을 순수한 정책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석재은, 2010).

[표 8 - 이중차이분석 모형]

	t=0 (도입 이전)	t=1 (기초연금 도입 이후)	차이
통제집단 (N=96)	Yc0	Yc1	$\Delta Yc = Yc1 - Yc0$
처치집단 (N=43)	Yt0	Yt1 (수급)	$\Delta Yt = Yt1 - Yt0$
차이			$\blacktriangle Yt = \Delta Yc - \Delta Yt$ (정책효과)

* t=0: 5차 조사로 2013(2012)년 자료, t=1: 6차 조사로 2015(2014)년 자료로 구성

2) 이중차이 회귀분석

이중차이 회귀분석(regression)을 수행하여 기초연금 수급여부 이외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고 순수한 기초연금의 수급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이 추정량을 구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중차이 분석에서 추정한 두 집단 간의 차이 값은,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자연적인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정책의 순수한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13). 회귀분석모형은 정책개입 효

과로 대변되는 성과가 종속변수가 되고, 독립변수에는 정책 변화 시점 전후를 나타내는 시기더미(period), 비교집단인지를 나타내는 집단더미(group), 정책개입 전후 집단 간 이중차이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시기더미와 집단더미 간 상호작용항(period×group), 그리고 종속변수인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구성한다. 이중차이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정책개입의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 간 상호작용항(period×group)의 β값이다¹¹⁾.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기초연금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 이중차이 회귀분석 모형]

$$Y(i,t) = \alpha + \beta_1 \cdot \text{Group} + \beta_2 \cdot \text{Period} + \beta_3 \cdot (\text{Period} \times \text{Group}) + \beta_4 \cdot \text{Control} + \varepsilon$$

-Y(i,t): t기에 정책수혜를 받은 개인 i의 소비지출(outcome)
 -Group: 정책수혜 집단 여부, 정책수혜=1, 비수혜=0
 -Period: 정책개입 및 정책변화 시기
 · 정책개입(변화) 이전 시기(pre-treatment period) t=0
 · 정책개입(변화) 이후 시기(post-treatment period) t=1
 -Period×Group: 정책수혜로 인한 성과(outcome) 변화 영향
 -Control: 성과(outcome)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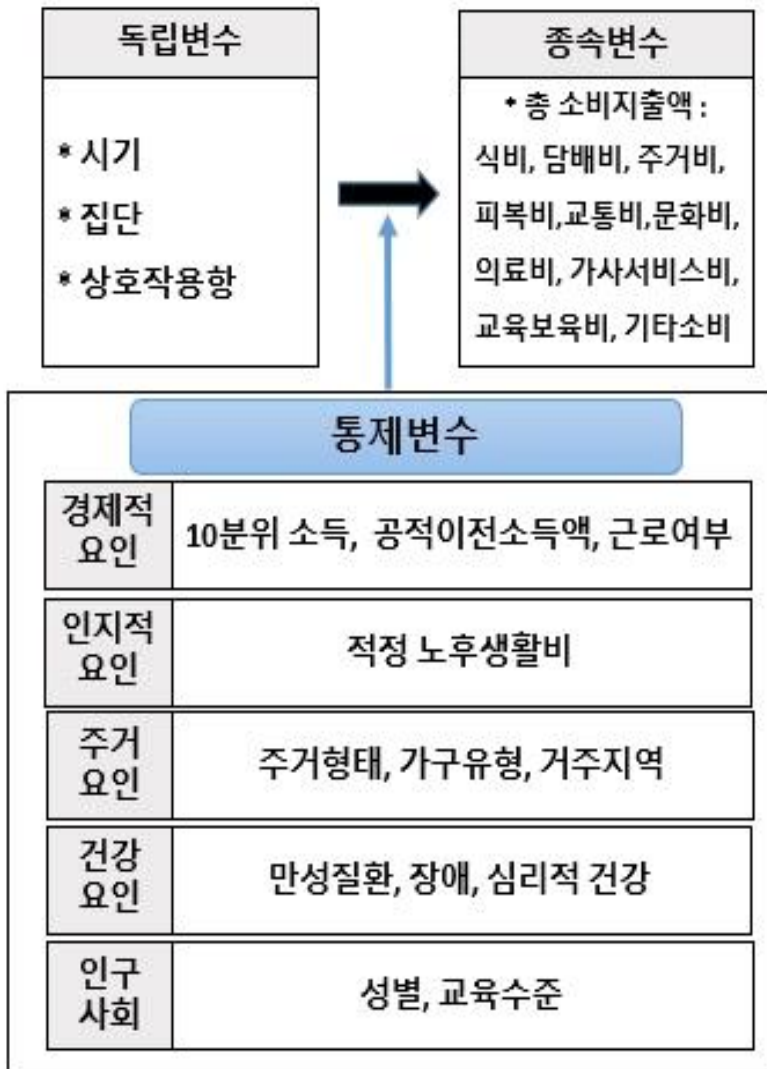
* (2010)에서 일부 수정

11) 회귀분석으로 구해진 DID 추정치는 시간변수 및 처리변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서, 개체 및 시간 특성을 감안한 정책의 순수한 한계효과이다. 해당 추정량이 정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treat)와 관련한 특성들이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평행추세가정(parallel-trend assump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4).

4.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 분석모형]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1. 인구학적 특성 및 영향요인 관련 기술통계

201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65세인 처치집단 43명과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만64세인 통제집단 96명을 대상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1) 경제적 요인, 2) 인지적 요인, 3) 주거 요인, 4) 건강 요인 5)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는 기초연금 도입 이전(5차 패널자료, 2013년 조사)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6차 패널자료, 2015년 조사)으로 나누어 변화의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요인 : 10분위 소득, 공적이전소득액, 근로여부

경제적 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는 10분위 소득, 근로여부, 공적이전소득액의 3개의 변수이다. 범주형 변수는 변수별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으로 나누어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도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으로 구분하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10분위 소득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은 평균 3.17분위에 표준편차는 1.73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평균적으로 3.21분위에 속하고 처치집단은 3.06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표준편차는

통제집단이 1.73이고 처치집단이 1.7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에서는 변화하는데, 전체 대상이 평균 3.20분위, 표준편차가 1.97로 크게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통제집단의 10분위 소득의 평균이 3.28로 지난 조사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였고, 처치집단은 3.04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소득 관련 기술통계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은 평균 4.13, 표준편차는 2.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제집단은 평균 4.24에 표준편차는 2.50, 처치집단은 평균 3.86에 표준편차는 2.35로 나타나 통제집단의 공적이전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를 기준으로 변화한다. 전체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평균이 4.67에 표준편차는 2.04으로 이전 조사시점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제집단은 평균 4.53에 표준편차는 2.37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처치집단은 평균 4.97에 표준편차가 0.93로 통제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로그화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공적이전소득액 자체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처치집단에서 더 높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이후 소득 관련 기술통계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셋째, 근로여부에 대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은 취업자가 65명으로 전체의 46.8%, 미취업자가 74명으로 53.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제집단에서는 취업자가 39명으로 40.6%를 차지하였고, 미취업자는 57명으로 59.4%를 차지하였다. 처치집단에서는 취업자가 26명으로 60.5%를

차지하였으며 미취업자는 17명으로 39.5%를 차지하여, 통제집단에 비하여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 시점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취업자는 65명으로 46.8%를 차지하였고 미취업자는 74명으로 53.2%를 차지하여 이전 조사시점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통제집단은 취업자가 40명으로 41.7%, 미취업자가 56명으로 58.3%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처치집단은 취업자가 25명으로 58.1%, 미취업자가 18명으로 41.9%로 약 3%미만의 미세한 변동이 있었다.

2) 인지적 요인 : 걱정 노후생활비

걱정 노후생활비 수준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이 평균 7.58, 표준편차가 0.28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평균 7.62에 표준편차 0.25, 처치집단은 평균 7.51에 표준편차 0.32로 통제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이 평균 7.66에 표준편차 0.28로 이전시점에 비하여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약간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은 평균 7.70에 표준편차 0.27, 처치집단은 평균 7.56에 표준편차 0.29로 두 집단 모두에서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노후생활비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약간 상승하였다. 이상의 경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에 해당하는 기술통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 경제적 요인 및 인지적 요인]

(단위: 명(%))

변수			기초연금 도입 이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통제	처치	전체	통제	처치	전체
요인	10 분위 소득	평균	3.21	3.06	3.17	3.28	3.04	3.20
		표준 편차	1.73	1.75	1.73	2.10	1.68	1.97
	근로 여부	취업	39(40.6)	26(60.5)	65(46.8)	40(41.7)	25(58.1)	65(46.8)
		미취업	57(59.4)	17(39.5)	74(53.2)	56(58.3)	18(41.9)	74(53.2)
	공적 이전 소득	평균	4.24	3.86	4.13	4.53	4.97	4.67
		표준 편차	2.50	2.35	2.45	2.37	0.93	2.04
인지 요인	적정 노후 비용	평균	7.62	7.51	7.58	7.70	7.56	7.66
		표준 편차	0.25	0.32	0.28	0.27	0.29	0.28

3) 주거 요인 : 주거형태, 가구유형, 거주지역

주거요인은 크게 주거형태, 거주지역, 가구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주거형태는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 중 자가 113명으로 81.3%, 전세가 13명으로 9.4%, 월세가 13명으로 9.4%로 자기 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자가 82명으로 85.4%, 전세가 6명으로 6.3%, 월세가 8명으로 8.3%로 나타났으며, 처치집단은 자가 31명으로 72.1%, 전세가 7명으로 16.3%, 월세가 5명으로 11.6%로 나타나 통제집단에서 자가 13%p가량 높게 나타

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 중 자가 114명으로 82.0%, 전세가 9명으로 6.5%, 월세가 16명으로 11.5%로 나타나 전세보다는 월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증가율이 2%p 정도의 차이로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자가 82명으로 85.4%, 전세가 5명으로 5.2%, 월세가 9명으로 9.4%로 나타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처치집단은 자가 32명으로 74.4%, 전세가 4명으로 9.3% 월세가 7명으로 16.3%로 나타나 미약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거형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둘째, 거주지역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 중 서울이 16명으로 11.5%, 광역시는 46명으로 33.1%, 기타지역은 77명으로 55.4%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서울이 12명으로 12.5%, 광역시가 32명으로 33.3%, 기타지역은 52명으로 54.2%, 처치집단은 서울이 4명으로 9.3%, 광역시가 14명으로 32.6%, 기타지역이 25명으로 58.1%로 나타나 처치집단이 서울에 비해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변수와 달리 거주지역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 중 서울이 16명으로 11.5%, 광역시가 46명으로 33.1%, 기타지역이 77명으로 55.4%로 나타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통제집단은 서울이 12명으로 12.5%, 광역시가 32명으로 33.3%, 기타지역은 52명으로 54.2%, 처치집단은 서울이 4명으로 9.3%, 광역시가 14명으로 32.6%, 기타지역이 25명으로 58.1%로 나타나 전체적인 경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사주기가 2년으로 길지 않은 점과 조사대상의 연령대가 고령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시·도 경계 간의 거주지 이동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

로 추론된다.

셋째로, 가구유형을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부부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대상자는 112명으로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녀 혹은 그 외의 가족들과 동거하는 동거가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7명으로 19.4%로 나타난 반면 독거가구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부부가구가 80명으로 83.3%, 동거가구가 16명으로 16.7%로 나타났으며, 처치집단은 부부가구가 32명으로 74.4%, 동거가구가 11명으로 25.6%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를 기준으로 독거가구의 형태로 거주하는 대상자가 7명으로 5%p가량으로 증가하였고 부부가구는 108명으로 77.7%, 동거가구는 24명으로 17.3%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부부가구가 79명으로 82.3%, 동거가구가 17명으로 17.7%로 나타나 이전 조사시점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한 변화는 처치집단에서 관찰되었는데, 독거가구가 0명에서 7명으로 16.3%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부가구는 29명으로 67.4%로 7%p가량 감소하였고, 가족들과 거주하는 동거가구는 7명으로 16.3%로 약 9%p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 주거요인]

(단위: 명(%))

변수		기초연금 도입 이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통제	처치	전체	통제	처치	전체	
요인	주거 형태	자가	82(85.4)	31(72.1)	113(81.3)	82(85.4)	32(74.4)	114(82.0)
		전세	6(6.3)	7(16.3)	13(9.4)	5(5.2)	4(9.3)	9(6.5)
		월세	8(8.3)	5(11.6)	13(9.4)	9(9.4)	7(16.3)	16(11.5)
	거주 지역	서울	12(12.5)	4(9.3)	16(11.5)	12(12.5)	4(9.3)	16(11.5)
		광역시	32(33.3)	14(32.6)	46(33.1)	32(33.3)	14(32.6)	46(33.1)
		기타	52(54.2)	25(58.1)	77(55.4)	52(54.2)	25(58.1)	77(55.4)
	가구 유형	독거	0(0.0)	0(0.0)	0(0.0)	0(0.0)	7(16.3)	7(5.0)
		부부	80(83.3)	32(74.4)	112(80.6)	79(82.3)	29(67.4)	108(77.7)
		동거	16(16.7)	11(25.6)	27(19.4)	17(17.7)	7(16.3)	24(17.3)

4) 건강 요인 : 만성질환, 심리적 건강수준, 장애

건강요인은 크게 만성질환, 심리적 건강, 장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만성질환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86명으로 61.9%, 만성질환을 겪고 있지 않는 대상자가 53명으로 38.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만성질환 보유자가 54명으로 56.3%, 만성질환 미보유자가 42명으로 43.8%로 분석된 반면에, 처치 집단의 경우 만성질환 보유자가 32명으로 74.4%, 만성질환 미보유자가 11명으로 25.6%로 나타나 처치집단에서 만성질환 보유자의 비율

이 약 18%p가량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 시점에도 지속되어 전체 대상자 중 만성질환 보유자가 90명으로 64.7%, 만성질환 미보유자가 49명으로 35.3%로 이전에 비해 만성질환 보유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부적으로도 통제집단의 경우 만성질환 보유자가 58명으로 60.4%, 만성질환 미보유자가 38명으로 39.6%로 만성질환 보유자의 비중이 이전 조사시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처치집단은 만성질환 보유자가 32명으로 74.4%, 만성질환 미보유자가 11명으로 25.6%를 차지하여 이전과 동일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 보유여부가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들로 설명가능한 현상으로 보인다.

둘째, 심리적 건강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는 60점 만점에 평균 10.97점, 표준편차 5.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제집단은 평균 10.7점에 표준편차 6.07, 처치집단은 11.55점에서 4.4으로 나타나 처치집단의 심리적 건강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대상자는 평균 12.8점, 표준편차 6.26으로 이전 조사시점에 비해 심리적 건강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제집단은 평균 11.95점, 표준편차 6.09, 처치집단은 평균 14.69점, 표준편차 6.31으로 두 집단 모두, 특히 처치집단의 경우 이전 조사시점에 비하여 심리적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건강이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D-D척도에 따라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으로 판명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예방조치가 필요한 잠재적인 위험 상황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여부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체 대상자 중 장애 보유자가 12명으로 8.6%, 미보유자가 127명으로 91.4%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장애 보유자가 8명으로 8.3%, 미보유자가 88명으로 91.7%이고, 처치집단은 장애 보유자가 4명으로 9.3%, 미보유자가 39명으로 90.7%로 통제집단과 유사하였다.

[표 12 - 건강요인]

(단위: 명(%))

변수			기초연금 도입 이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통제	처치	전체	통제	처치	전체
요인	만성 질환	있음	54(56.3)	32(74.4)	86(61.9)	58(60.4)	32(74.4)	90(64.7)
		없음	42(43.8)	11(25.6)	53(38.1)	38(39.6)	11(25.6)	49(35.3)
	심리 건강	평균	10.70	11.55	10.97	11.95	14.69	12.80
		표준 편차	6.07	4.40	5.60	6.09	6.31	6.26
	장애	있음	8(8.3)	4(9.3)	12(8.6)	8(8.3)	4(9.3)	12(8.6)
		없음	88(91.7)	39(90.7)	127(91.4)	88(91.7)	39(90.7)	127(91.4)

5) 인구사회적 요인 : 성별, 교육수준

마지막으로 인구사회적인 요인은 성별과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요인들은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5차 조사시점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6차 조사시점에서 별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첫째, 성별은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54명으로 38.8%, 여성이 85명으로 61.2%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남성이 39명으로 40.6%, 여성이 57명으로 59.4%로 나타났으며 처치집

단은 남성이 15명으로 34.9%, 여성이 28명으로 65.1%로 나타나 처치집단에서 여성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둘째로 교육수준, 즉 학력사항의 경우는 조사시점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 대상자 중 무학이 9명으로 6.5%, 초등학교 졸업이 62명으로 44.6%, 중학교 졸업이 30명으로 21.6%, 고등학교 졸업이 33명으로 23.7%, 대학교 졸업 이상이 5명으로 3.6%를 차지하여 조사 대상자의 과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무학이 6명으로 6.3%, 초등학교 졸업이 41명으로 42.7%, 중학교 졸업이 21명으로 21.9%, 고등학교 졸업이 23명으로 24%, 대학교 졸업 이상이 5명으로 5.2%로 나타났으며, 처치집단은 무학이 3명으로 7.0%, 초등학교 졸업이 21명으로 48.8%, 중학교 졸업이 9명으로 20.9%, 고등학교 졸업이 10명으로 23.3%, 대학교 졸업 이상이 0명으로 나타나 통제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 인구사회적요인]

(: 명(%))

변수			기초연금 도입 이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통제	처치	전체	통제	처치	전체
인구 사회 요인	성별	남성	39(40.6)	15(34.9)	54(38.8)	39(40.6)	15(34.9)	54(38.8)
		여성	57(59.4)	28(65.1)	85(61.2)	57(59.4)	28(65.1)	85(61.2)
	교육	무학	6(6.3)	3(7.0)	9(6.5)	6(6.3)	3(7.0)	9(6.5)
		초등	41(42.7)	21(48.8)	62(44.6)	41(42.7)	21(48.8)	62(44.6)
		중등	21(21.9)	9(20.9)	30(21.6)	21(21.9)	9(20.9)	30(21.6)
		고등	23(24.0)	10(23.3)	33(23.7)	23(24.0)	10(23.3)	33(23.7)
		대학	5(5.2)	0(0.0)	5(3.6)	5(5.2)	0(0.0)	5(3.6)

2. 소득구조의 변화¹²⁾

1) 총 소득의 변화

기초연금의 도입이 소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이전에 우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소득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현금급여 형태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일차적인 정책목표는 지급대상이 되는 노인의 소득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지급으로 인하여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야 경제적 자원이 증가하여 이러한 소득변화에서 야기되는 소비지출 증가, 빈곤해소 등의 정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소비지출 분석에 대한 전제가 되므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의 소득원천별 증감액 및 비중 변화를 연도별로 평균을 비교하였다. 소득은 가구소득액을 가구원 수를 고려한 1인 균등화 소득액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이중차이분석 시에는 편차를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활용하였다¹³⁾. 각 소득원천별 비중은 총 소득 대비로 계산하였으며, 증감수치와 증감률을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총 소득구조를 살펴본 이후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이전소득 부분도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12) 본 패널데이터의 특성 상 소비, 소득, 저축 등 경제활동변수는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수집되었으므로, 도입 이전(2013년 조사시점)의 소득, 소비 등의 항목은 2012년, 도입 이후(2015년 조사시점)의 소득, 소비 등의 항목은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13) 본 패널데이터의 경우 소득정보는 가구, 개인단위가 모두 존재하나, 종속변수인 소비지출을 균등화지수로 변환하여 활용한 점을 고려하였으므로 변수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소비지출과 동일하게 균등화한 수치를 일종의 개인 소득액으로 의제하여 활용하였다.

[표 14 - 소득구조의 변화]

(: 만원(%), 월평균)

변수	통제집단(N=96)			처치집단(N=43)			B-A
	도입 전	도입 후	증감(A)	도입 전	도입 후	증감(B)	
소득	118.1 (100%)	127.1 (100%)	+9.0 (+7.6%)	113.2 (100%)	124.8 (100%)	+11.6 (+10.2%)	+2.6
경상 소득	116.1 (98.3%)	126.5 (99.5%)	+10.4 (+8.9%)	111.9 (98.8%)	120.3 (96.3%)	+8.4 (+7.0%)	-2.0
-근로	68.0 (57.6%)	75.7 (59.5%)	+7.7 (+11.3%)	80.3 (70.9%)	79.9 (64.0%)	-0.4 (-0.4%)	-8.1
-금융	4.6 (3.9%)	3.6 (2.8%)	-1.0 (-21.7%)	1.9 (1.6%)	1.2 (0.9%)	-0.7 (-36.8%)	+0.3
-재산	7.6 (6.4%)	6.7 (5.2%)	-0.9 (-11.8%)	2.3 (2.0%)	1.4 (1.1%)	-0.9 (-39%)	0
-이전	35.6 (30.1%)	40.2 (31.6%)	+4.6 (+12.9%)	27.4 (24.2%)	37.7 (30.2%)	+10.3 (+37.6%)	+5.7
소비	93.0 (78.7%)	91.8 (72.2%)	-1.2 (-1.2%)	85.7 (75.7%)	88.5 (70.9%)	+2.8 (+3.2%)	+4.0
저축	2.0 (1.6%)	0.6 (0.4%)	-1.4 (-70.0%)	8.9 (7.8%)	12.2 (9.7%)	+3.3 (37.0%)	+4.7

* 주: 증감 열의 괄호 안은 증감률이며, 구성비율의 변화(%p)는 별도 미표기

우선, 통제집단부터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소득이 월 평균 약 9만원(이전 대비 +7.6%) 정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소득원천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월평균 68만원에서 75.7만원으로 약 7.7만원(이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로는 오히려 -2.1%p로 미약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전체이전소득이 월평균 35.6만원에서 40.2만원으로 약 4.6만원(이전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로는 약 1.5%p로 미약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치집단의 경우에도 총 소득이 기초연금 도입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총 소득은 월 평균 113.2만원에서 124.8만원으로 약 11.6만원(이전 대비 +10.2%)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전소득에 기인하는데, 이전소득은 도입 이전 월 평균 27.4만원에서 37.7만원으로 10.3만원(이전 대비 +37.6%)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도 +6.0%p로 증가하였다. 반면, 이전소득 외 근로, 금융, 재산소득은 대부분 월 1만원 미만으로 약하게 감소하여 이전소득의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경상소득과 총 소득이 증가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소득 증감을 살펴보면,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월 평균 2.6만원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이 약 5.7만원 상승하여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약 8.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술통계 결과 통제집단의 취업자가 1명, 약 +1.1%p 증가하고, 처치집단의 취업자는 1명, 약 -2.4%p로 미약하게 감소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또한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소비와 저축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각각 월 평균 4.0만원, 4.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의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전소득의 변화

기초연금이 포함되는 총 이전소득의 변화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요건 등의 상호 관련성 때문에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집단의 경우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소득이 월 평균 약 4.6만원(이전 대비 +12.9%) 정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소득원천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은 월 평균 27.2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약 3만원(이전 대비 +11.0%)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로는 오히려 -1.3%p로 미약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은 월 평균 8.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약 1.6만원 증가(이전 대비 +19.0%)하였으며 구성비도 1.3%p 증가하였다.

[표 15 - 이전소득의 변화]

(단위: 만원(%), 월평균)

	통제집단(N=96)			처치집단(N=43)			B-A
	도입 전	도입 후	차이(A)	전	후	차이(B)	
총 이전 소득	35.6 (100%)	40.2 (100%)	+4.6 (+12.9%)	27.4 (100%)	37.7 (100%)	+10.3 (+37.5%)	+5.7
이전	27.2 (76.4%)	30.2 (75.1%)	+3.0 (+11.0%)	16.1 (58.7%)	26.8 (71.0%)	+10.7 (+66.4%)	+7.7
-연금	26.3 (73.8%)	27.2 (67.6%)	+0.9 (+3.4%)	16.0 (58.3%)	13.8 (36.6%)	-2.2 (-13%)	-3.1
-기타	0 (0%)	1.6 (3.9%)	+1.6 (+100%)	0 (0%)	13 (34.4%)	+12.95 (100%)	+11.35
(기초 연금)	0	0	0	0 (0%)	12.2 (32.3%)	+12.2 (100%)	+12.2
사적 이전	8.4 (23.5%)	10.0 (24.8%)	1.6 (+19.0%)	11.3 (41.2%)	10.9 (28.9%)	-0.4 (-3.5%)	-2.0

* 주: 증감 열의 괄호 안은 증감률이며, 구성비율의 변화(%p)는 별도 미표기.

처치집단의 경우는 통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총 이전소득이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기 이전의 월 27.4만원에서 도입 이후 37.7만원으로 약 10.3만원(이전 대비 +37.5%) 증가하여 통제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이전소득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데, 총 공적이전소득은 약 10.7만원(이전 대비 +66.4%) 가량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기초연금은 0원에서 월 평균 12.2만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가 가구균등화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적지 않은 규모의 소득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도입 이후 0.4만원(이전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구성비로는 12.3%p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점차적으로 대체되는 양상으로 추정되며 향후의 추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소득 증감을 살펴보면,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월 평균 5.7만원 총 이전소득이 증가하였고, 2만원 가량의 사적이전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7.7만원의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득 증가와 더불어 불안정한 소득인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줄고 안정적인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 구조가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전체 공적이전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득증가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통한 소득의 증가는 소비 기반의 확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소비지출액의 변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처치집단 및 통제집단의 세부 소비지출별 증감액 및 비중을 기초연금 도입 이전과 이후별로 평균비교하였다. 자세한 변화 양상은 이중차이분석을 통하여 분석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경향 위주로 살펴보았다. 소비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비액을 가구원 수를 고려한 1인 균등화 소비액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각 세부 항목별 비중은 총 소비지출 대비로 계산하고 비중을 병기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증감수치를 집단별로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표 16 - 소비지출액의 변화]

(: 만원, 월평균)

변수	통제집단(N=96)					처치집단(N=43)					B-A
	도입 전		도입 후		증감 (A)	도입 전		도입 후		증감 (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소비	93.0 (38.6)	100%	91.8 (37.2)	100%	-1.2	85.7 (33.8)	100%	88.5 (32.6)	100%	+2.8	+4.0
식비	31.8 (14.4)	34.1%	33.4 (15.2)	36.3%	+1.6	29.3 (12.8)	34.1%	29.9 (10.9)	33.7%	+0.6	-1.0
담배	3.6 (4.3)	3.8%	3.9 (4.7)	4.2%	+0.3	4.7 (7.7)	5.4%	3.8 (4.4)	4.2%	-0.9	-1.2
주거	13.2 (7.5)	14.1%	14.9 (11.6)	16.2%	+1.7	12.3 (7.5)	14.3%	17.5 (22.8)	19.7%	+5.2	+3.5
피복	4.2 (4.0)	4.5%	3.2 (2.5)	3.4%	-1.0	3.5 (3.1)	4.0%	3.1 (2.2)	3.5%	-0.4	+0.6
교통 통신	17.2 (9.9)	18.4%	17.4 (11.2)	18.9%	+0.2	15.0 (9.4)	17.5%	14.2 (8.2)	16.0%	-0.8	-1.0
문화	2.9 (5.6)	3.1%	1.9 (2.0)	2.0%	-1.0	1.6 (1.7)	1.8%	2.6 (3.8)	2.9%	+1.0	+2.0
의료	9.1 (12.2)	9.7%	8.6 (12.4)	9.3%	-0.5	10.1 (11.0)	11.7%	9.1 (6.1)	10.2%	-1.0	-0.5
가사 서비스	1.2 (5.9)	1.2%	1.4 (3.7)	1.5%	+0.2	2.3 (10.8)	2.6%	1.3 (2.4)	1.4%	-1.0	-1.2
교육 보육	0.7 (4.4)	0.7%	0.6 (3.8)	0.6%	-0.1	0.4 (2.1)	0.4%	0.4 (1.8)	0.4%	0	+0.1
기타 소비	8.6 (9.2)	9.2%	6.1 (8.9)	6.6%	-2.5	6.0 (6.4)	7.0%	6.2 (10.5)	7.0%	+0.2	+2.7

*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우선, 총 소비지출을 통제집단부터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도입 되기 이전 월 평균 93만원에 비해 도입 이후 91.8만원으로 약 1.2만원 감소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도 기초연금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약 3%p 가량의 미세한 변동만이 관찰되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순서는 도입 이후를 기준으로 식비(36.3%), 교통통신비(18.9%), 주거비(16.2%), 보건의료비(9.3%) 순으로 나타나며 도입 이전도 동일하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총 소비지출이 기초연금 도입 이전 월 평균 85.7만원에서 도입 이후 88.5만원으로 약 2.8만원 증가하였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주거비가 5.2만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의 순서도 도입 이전 식비(34.1%), 교통통신비(17.5%), 주거비(14.3%)의 순서에서 식비(33.7%), 주거비(19.7%), 교통통신비(16.0%)의 순서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다만,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주거비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거비 상승은 외부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소비지출 증감을 비교해보면, 처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총 소비지출이 약 월 평균 4.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 등이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소득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소비지출은 총 소득의 증가, 특히 안정적인 소비지출원천인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소비지출의 경향은 집단별 평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므로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소비지출의 변화

1. 이중차이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액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소비지출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는 0.060으로 양수로 산출되어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연금 도입 전후 모두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사이의 총 소비지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비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상대적인 소비 격차가 감소하였으며, 통제집단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처치집단은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였다. 즉,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처치집단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 - 총 소비지출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처치집단	집단 차이
도입 이전	6.783 (0.041)	6.702 (0.045)	-0.081 (t=-1.092)
도입 이후	6.749 (0.039)	6.728 (0.337)	-0.021 (t=-0.300)
시기 차이	-0.034 (t=0.603)	0.026 (t=0.328)	0.060 ()

* 주: 1. t값을 제외한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세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의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식비, 담배비,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등은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¹⁴⁾. 다만, 기초연금 도입 전과 후 모두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 식비, 담배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의 변화는 단순이중차이 분석 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피복비의 경우 통제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비하여 도입 이후 피복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처치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전후의 피복비 지출 규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피복과 관련된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가사서비스비의 경우는 통제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비하여 도입 이후 피복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처치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전후의 피복비 지출 규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피복과 관련된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다음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엄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자연로그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집단 및 시기 차이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비와 같은 일부 변수의 경우 소비지출 증감에 대한 결과가 기술통계 결과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18 - 세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처치집단		집단 차이
비	도입 이전	5.692 (0.046)	5.627 (0.404)	-0.065 (t=-0.798)
	도입 이후	5.720 (0.043)	5.630 (0.401)	-0.090 (t=-1.178)
	시기 차이	0.028 (t=0.454)	0.003 (t=0.040)	-0.025 (정책효과)
담배	도입 이전	2.331 (0.205)	2.792 (1.858)	0.460 (t=1.274)
	도입 이후	2.480 (0.198)	2.613 (1.813)	0.132 (t=0.379)
	시기 차이	0.149 (t=0.521)	-0.179 (t=-0.452)	-0.328 (정책효과)
주거	도입 이전	4.740 (0.064)	4.671 (0.601)	-0.069 (t=-0.609)
	도입 이후	4.788 (0.067)	4.796 (0.080)	0.007 (t=0.055)
	시기 차이	0.048 (t=0.518)	0.124 (t=0.811)	0.076 (정책효과)
피복	도입 이전	3.423 (0.094)	3.114 (1.239)	-0.308 (t=-1.629)
	도입 이후	3.149 (0.096)	3.102 (1.069)	-0.047 (t=-0.260)
	시기 차이	-0.273** (t=-2.206)	-0.012 (t=-0.046)	0.261 (정책효과)
문화	도입 이전	2.716 (0.122)	2.390 (1.040)	-0.326 (t=-1.540)
	도입 이후	2.449 (0.116)	2.549 (1.305)	0.100 (t=0.456)
	시기 차이	-0.267 (t=-1.583)	0.159 (t=0.621)	0.426 (정책효과)
교통통신	도입 이전	4.981 (0.068)	4.799 (0.766)	-0.182 (t=-1.412)
	도입 이후	4.978 (0.062)	4.770 (0.641)	-0.207* (t=-1.818)
	시기 차이	-0.003 (t=-0.037)	-0.028 (t=-0.190)	-0.025 (정책효과)
의료	도입 이전	4.001 (0.122)	4.209 (1.054)	0.207 (t=0.975)
	도입 이후	3.984 (0.096)	4.240 (0.835)	0.255 (t=1.521)
	시기 차이	-0.017 (t=-0.110)	0.031 (t=0.149)	0.048 (정책효과)
가사	도입 이전	0.717 (0.150)	0.789 (1.624)	0.072 (t=0.260)
	도입 이후	1.190 (0.169)	1.171 (1.670)	-0.019 (t=-0.063)
	시기 차이	0.473** (t=2.086)	0.382 (t=1.074)	-0.091 (정책효과)
교육	도입 이전	0.212 (0.105)	0.211 (0.970)	-0.001 (t=-0.005)
	도입 이후	0.204 (0.101)	0.207 (0.952)	0.003 (t=0.017)
	시기 차이	-0.007 (t=-0.052)	-0.003 (t=-0.017)	0.004 (정책효과)
기타	도입 이전	3.864 (0.128)	3.351 (1.399)	-0.513* (t=-2.147)
	도입 이후	3.008 (0.181)	3.124 (1.525)	0.116 (t=0.370)
	시기 차이	-0.856* (t=-3.848)	-0.227 (t=-0.719)	0.629 (정책효과)

주: 1. t값을 제외한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2.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1) 주요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준실험설계의 특성 상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분석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자 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3 미만으로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총 소비지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가중치 부여 이후 피복비와 문화생활비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즉,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집단의 피복비, 문화생활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문화생활비, 피복비는 여가 및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소득에 대해서 탄력성이 높은 편에 속하여 일종의 사치재적인 소비지출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¹⁶⁾. 따라서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러

15) 빈곤가구,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표본 수가 작아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참고로 빈곤가구는 피복비, 문화비, 독거·부부가구는 총 소비지출, 피복비, 문화비 지출이 기초연금 도입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가구, 동거가구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6)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피복비 지출이 일상 소비인지, 고가의 사치성 소비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나 분석대상 자료의 한계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피복비, 여가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학영, 2010; 정운영·정세은, 2010; 최옥금, 2011).

한 특성을 지닌 문화생활비, 피복비 지출에 우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변화가 총 소비지출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나, 소득탄력성이 높은 일부 소비지출 변화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식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은 소비지출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 소비항목들은 소비지출 내에서의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일종의 필수재적인 소비지출에 해당하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월 평균 10~20만원의 높지 않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간 단기간 소비지출 변화라는 조사 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정형화된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가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도 소득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적 소비항목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에서 시기더미의 경우 피복비, 문화생활비, 기타 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2014년에 피복비, 문화생활비, 기타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더미의 경우 기타 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기타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¹⁷⁾

17) 가중치 부여 이전의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가중치 부여 이후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가중치 부여 이후 일부 변수에서 회귀계수의 절대값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표 19 -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1/2)]

구분		지출	식비	담배	주거	피복	문화
시기		-0.07 (0.05)	0.02 (0.06)	0.15 (0.28)	0.02 (0.10)	-0.37** (0.15)	-0.43** (0.17)
집단		-0.06 (0.07)	-0.02 (0.08)	0.48 (0.35)	0.00 (0.12)	-0.21 (0.18)	-0.33 (0.21)
시기·집단		0.14 (0.09)	0.04 (0.10)	-0.59 (0.48)	0.17 (0.17)	0.50** (0.25)	0.66** (0.30)
경제	10분위 소득	0.09*** (0.01)	0.07*** (0.01)	0.07 (0.07)	0.05** (0.02)	0.08** (0.03)	0.08** (0.04)
	공적 이전	0.00 (0.01)	-0.02 (0.01)	0.05 (0.06)	-0.01 (0.02)	0.02 (0.03)	0.00 (0.03)
	근로	-0.02 (0.05)	-0.18*** (0.06)	0.48** (0.26)			
인지	적정 생활비	0.24*** (0.08)	0.07 (0.09)	-0.61* (0.42)	0.53*** (0.15)	0.76*** (0.23)	0.52** (0.26)
주거	주거 형태	0.01 (0.03)			0.15** (0.06)		
	가구 유형	-0.01 (0.05)			-0.05 (0.10)		
	거주 지역	-0.02 (0.03)			-0.14** (0.06)	0.25*** (0.09)	0.00 (0.10)
건강	만성 질환	0.09** (0.05)	0.02 (0.05)			-0.17 (0.13)	0.12 (0.15)
	장애	-0.11 (0.08)					
	심리 건강	0.00 (0.00)		0.06*** (0.02)			
인구통계	성별	-0.12** (0.05)	-0.16*** (0.06)	-0.73** (0.26)	-0.07 (0.09)	-0.24* (0.14)	0.08 (0.16)
	교육	0.06** (0.04)	0.03 (0.02)	-0.07 (0.12)	0.09* (0.05)	0.08 (0.07)	0.19** (0.08)
상수		4.99*** (0.66)	5.21*** (0.70)	7.19** (3.25)	0.66** (1.21)	-3.07 (1.82)	-2.12 (2.11)
R-square		0.27	0.15	0.11	0.17	0.14	0.08

: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표 20 -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2/2)]

구분		의료	가사	교육	기타	
시기		-0.11 (0.09)	-0.09 (0.15)	0.30 (0.23)	-0.03 (0.14)	-0.81*** (0.21)
집단		-0.21* (0.11)	0.18 (0.18)	0.06 (0.28)	-0.04 (0.18)	-0.60** (0.18)
시기·집단		0.10 (0.15)	-0.04 (0.25)	0.30 (0.40)	0.12 (0.25)	0.66* (0.36)
경제	10분위 소득	0.13*** (0.02)	0.00 (0.04)	0.16*** (0.05)	0.08** (0.03)	0.19*** (0.05)
	공적 이전	0.01 (0.02)	0.05* (0.03)	0.09** (0.05)	-0.05 (0.03)	0.10** (0.04)
	근로	0.11 (0.09)		-0.32 (0.22)	-0.09 (0.14)	
인식	적정 생활비	0.38*** (0.14)	0.51** (0.22)	1.03*** (0.35)	0.18 (0.22)	-0.02 (0.32)
주거요인	주거 형태					
	가구 유형			0.54** (0.22)	0.20 (0.14)	0.30 (0.20)
	거주 지역	0.13** (0.05)		0.11 (0.14)	0.13 (0.09)	-0.22* (0.12)
건강	만성 질환	0.20*** (0.08)	0.31** (0.13)			0.57*** (0.18)
	장애		0.07 (0.21)			
	심리 건강		0.01 (0.01)			
인구통계	성별	-0.11 (0.09)	0.46*** (0.14)	-0.68*** (0.22)	0.18 (0.14)	-0.75*** (0.20)
	교육	0.06 (0.04)	0.11 (0.07)	-0.15 (0.10)	-0.08 (0.07)	-0.06 (0.10)
상수		1.18 (1.09)	-1.60 (1.68)	-7.71*** (2.85)	-1.97 (1.77)	3.96 (2.55)
R-square		0.23	0.12	0.15	0.08	0.20

: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통제변수 중에서 특히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항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경제적 요인인 10분위 소득과 인식적 요인인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으로 나타났다. 첫째, 10분위 소득과 관련하여 10분위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식비,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경제학적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소득 변수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통제하여야 다른 변수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과 관련하여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적정한 소비지출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소비지출에 대한 욕구와 개인의 이상적인 목표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분석대상자가 이미 노년층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정 노후생활비는 현 시점에서의 소비지출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의미하며 이러한 소비지출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실제 소비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변수는 해당되는 세부 소비지출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개별 소비지출 항목별 회귀분석 결과

총 소비지출은 앞서 살펴본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외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성별,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보유할 경우 질병관리를 위하여 고정적인 소비지출 수요가 발생하여 총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비는 10분위 소득 외에 근로여부와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상태이고 남성일수록 식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일 경우, 회사에서 점심 등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식비에 대한 소비지출이 미취업 상태인 대상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비는 근로여부, 심리적 건강,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에 종사할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담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높을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외에 주거요인에 해당하는 주거형태와 거주지역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가 아닐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며, 대도시 지역일수록 주택 가격이 높아 이와 관련된 주거비와 제반비용이 부담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복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거주지역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 거주할수록 피복비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등 중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야외활동으로 인한 별도의 피복 구매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피복비의 특성상 피복비 지출을 일상적인 소비인지, 고가의 사치성 소비인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보다 엄밀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문화생활비는 10분위 소득, 적정생활비 이외에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통신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거주지역과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지역일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교통통신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지역은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접근성이 낮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 수요로 인하여 교통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정기적인 병원 내원 등으로 인한 교통비, 가족구성원들과의 정기적 연락으로 인한 통신비 등의 교통통신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만성질환, 성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여성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보유할 경우 자연스럽게 진료비 등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사서비스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공적이전소득, 가구유형,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이전소득액이 많을수록, 독거보다는 부부, 동거 등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유형에 해당할수록, 남성일수록 가사서비스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유형에 해당할수록 냉난방용품, 세탁용품, 주방용품 등 구입비 증가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교육보육비는 10분위 소득 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타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외에 공적이전소득, 만성질환, 성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후보장패널조사의 5차 자료(2013년 수집)와 6차 자료(2015년 수집)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처치집단은 기초연금 시행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1949년생으로, 통제집단은 연령 상 수급집단에 가장 인접한 수급예정 집단인 1950년생으로 활용하였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단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후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검증하였다.

우선 단순 이중차이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통제집단에 비하여 처치집단의 총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의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식비, 담배,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등은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피복비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가사서비스비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

들의 생활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식비, 담배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지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소비지출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피복비와 문화생활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생활비, 피복비는 여가 및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특성이 문화생활비, 피복비 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은 소비지출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소비항목들은 소비지출 내의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변화가 총 소비지출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소득탄력성이 높은 일부 소비지출부터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초연금의 10~20만원의 낮은 급여 수준, 시행 후 6개월 자료라는 조사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지출 항목에 10분위 소득과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식비, 피복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경제학적 해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생활비로 표현되는 소비지출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실제 소비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 항목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외에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비는 10분위 소득 외 미취업상태이고 남성일수록 식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담배비는 근로활동에 종사할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담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넷째, 주거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자가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피복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거주 지역 중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 거주할수록 피복비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섯째, 문화생활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생활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일곱째, 교통통신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대도시가 아닌 중소지역일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덟째, 보건의료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여성일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아홉째, 가사서비스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독거보다는 부부, 동거가구 등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 유형에 해당할수록, 남성일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외에 교육보육비는 10분위 소득 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외에 공적이전소득, 만성질환, 성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 달리 세부 소비지출항목별 개념적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통제하여 소비지출항목별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비 등 소비지출 내에서의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한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생활비, 피복비와 같이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소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시행 후 6개월 간의 자료라는 조사자료 특성, 10~20만원의 낮은 급여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사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행 이후 6개월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자의 고착된 소비행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비행태의 변화는 효용의 변화와 직결되므로 노인 등 소비자들이 시차를 두고 소비행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0~20만원의 높지 않은 급여수준 때문에 소득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일부 소

비지출에만 변화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식비, 주거비 등 소비지출 내에서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소비지출의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후 조사될 예정인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의 소비지출 증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6개월이라는 시간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지출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나아가서는 복지지출의 재정적 선순환효과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부 소비지출항목 외의 다른 소비지출항목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 지급방식 등의 제도설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 시점의 한계이다. 현재 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15년 수행된 6차 자료까지 진행되었으므로 가장 최근의 소비지출 자료 수집기준은 2014년이어서 2014년 6월에 시행된 기초연금의 효과가 최대 6개월 반영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소비지출의 유의미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소득탄력성이 높은 문화비 등의 소비지출

만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소비지출 변화의 점진적인 시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패널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자료 구성의 한계이다. 우선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순(net)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수급자를 처치집단으로 선정하였으나 표본 수가 43명으로 크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중치를 활용하여 표본 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였으나, 빈곤가구 및 가구유형별 분석 등 정책효과를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추가분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소득, 저축, 사전이전지출 등은 가구 및 개인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나, 소비지출은 가구 단위로만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 단위의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에 조응하도록 가구 소비지출액을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추후 소비지출 변수의 엄밀성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개인 단위의 변수들을 가구단위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의 구성의 한계이다. 우선 연령을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연도별 변화양상을 분석함에 따라, 연령의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감 효과가 분석결과에 혼재하고 있다. 또한 통제집단을 수급기준과 유사하게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직역연금 수급여부, 근로소득의 공제, 지역별 재산공제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여부는 추가로 반영하였으나 구체

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분석자료 상의 한계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 강성진 · 권혁진. 2006. “가구균등화와 빈곤평가: 한국도시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4(4): 61-97.
- 강성호 · 임병인. 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5(2): 55-85.
- 강성호 · 임병인. 2011. “연금자산 존재 및 형태의 노인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효과.” *경제연구* 29(1): 87-114.
- 강성호 · 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43~71.
- 강소량 · 문상호. 2013.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4): 59-85.
- 권규호 · 오지윤. 2014.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김경아. 2008.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1(4): 1503-1523.
- 김교성 · 김성욱 · 이정면 · 노혜진.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19.
- 김대일. 2015.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연계.” *노동경제논집* 38(2): 25-58.
- 김수영 · 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 1559-1575
- 김재호 · 정주연. 2012.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421-446.
- 김진욱. 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1(1): 111-127.
- 김태성 · 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학주. 2006.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2(4): 141-161.
- 김현수 · 석상훈. 2013. “중·고령자의 은퇴리스크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보장연구* 29(2): 135-165.
- 김환준. 2006.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층방법상의 쟁점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31: 285-303.
- 금현섭 · 백승주. 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

- 화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145-175.
- 민인식·최필선. 2013.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문수·정호근·고대영·이경희. 2014.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5564-5577.
- 박문수·정호근·김화년·고대영. 2015.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6(2): 987-994.
- 박정수·김준기. 2015.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2인 가구의 65세 전후 회귀단절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45-370.
- 반정호·김경휘. 2008.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4(3): 1-28.
- 백학영. 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911-931.
- 보건복지부. 2014a.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4b.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5.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 서영빈·송헌재. 2015.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8(3): 119-147.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연금포럼* 38: 48-57.
- 석재은. 2010.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26(3): 73-98.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외. 2015.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35(2): 64-99.
- 성영애. 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 성영애·양세정. 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손병돈. 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1445-1461.
- 손상희. 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신성희. 2016.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세정 · 성영애. 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여유진. 2002.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여유진. 2013.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관사회정책* 40: 185-219.
- 여윤경 · 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 여윤경. 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인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유란희 · 김성훈 · 유지연. 2012.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대안별 빈곤완화 효과 및 소요재원 규모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찬영. 1996. “노령수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 194-201
- 원종욱 외. 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형 · 김근홍. 2003. “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43-60.
- 이성림. 2015.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과 소비 격차.” *한국인구학* 38(2): 85-111.
- 이소정 외. 2008.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2007. “현대 소비사회의 빈곤 분석: 저소득층의 소비패턴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소정. 2009. “저소득 가구의 소비패턴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사회보장연구* 25(3): 317-336
- 이승호 · 구인회 · 손병돈. 2016.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소득, 지출, 빈곤에 미친 영향: 이중차이 방법의 적용.”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용하 · 김원섭. 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9(2): 1-25.
- 이은영. 2015.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및 노인 빈곤 추이 분석.” *연금이슈&동향분석* 23.

- 이정화 · 문상호. 2014.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3(3): 411-440.
- 이채정 · 권혁주, 2016.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 365-388.
- 임완섭. 2015.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2016.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236: 82-97.
- 장현주. 201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현대사회와 행정* 23(2): 121-146.
- 장현주. 2015.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고부담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417-436.
- 정경희 외. 2009.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숙. 2000.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59-74.
- 정운영 · 정세은. 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21-48.
- 최옥금. 2011.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51: 277-296.
- 탁현우. 2016.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효과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6-2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ndo, A. and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ECD, 2011. Pension at Glance. OECD
- OECD, 2013. Pension at Glance. OECD
- OECD, 2015. Pension at Glance. OECD
- Smeeding, T.M. and Susanna, S. 2005. "Poverty and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A cross-national view of low income older women.” the Luxembourg Income Study(LIS) Working Paper Series 398.

부록

[표 21 - 가중치 부여 이전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1/2)]

구분	지출	식비	담배	주거	피복	문화	
시기	-0.05 (0.05)	0.03 (0.06)	0.14 (0.27)	0.00 (0.10)	-0.32** (0.14)	-0.30* (0.16)	
집단	-0.06 (0.06)	-0.02 (0.08)	0.19 (0.35)	-0.02 (0.12)	-0.21 (0.18)	-0.28 (0.21)	
시기·집단	0.09 (0.09)	0.00 (0.11)	-0.43 (0.49)	0.11 (0.16)	0.29 (0.25)	0.48 (0.30)	
경제	10분위 소득	0.08*** (0.01)	0.07*** (0.01)	0.04 (0.06)	0.03 (0.02)	0.07** (0.03)	0.08** (0.04)
	공적 이전	-0.00 (0.01)	-0.02* (0.01)	0.04 (0.05)	0.00 (0.01)	0.00 (0.03)	-0.02 (0.03)
	근로	-0.01 (0.05)	-0.14** (0.06)	0.48* (0.26)			
인식	적정 생활비	0.20*** (0.08)	0.08 (0.09)	-0.84** (0.41)	0.44*** (0.14)	0.59*** (0.22)	0.38 (0.25)
주거요인	주거 형태	0.00 (0.03)			0.12** (0.06)		
	가구 유형	0.00 (0.05)			0.04 (0.10)		
	거주 지역	-0.02 (0.03)			-0.11* (0.05)	0.12 (0.09)	-0.13 (0.10)
건강	만성 질환	0.10** (0.05)	0.00 (0.05)			-0.16 (0.13)	0.19 (0.15)
	장애	-0.07 (0.08)					
	심리 건강	0.00 (0.00)		0.05** (0.02)			
인구통계	성별	-0.09* (0.05)	-0.10* (0.06)	-0.59** (0.26)	-0.07 (0.09)	-0.14 (0.13)	-0.01 (0.16)
	교육	0.05** (0.02)	0.04 (0.02)	-0.16 (0.12)	0.90** (0.04)	0.06 (0.07)	0.13* (0.08)
상수	5.20*** (0.63)	5.02*** (0.69)	9.17*** (3.20)	1.12 (1.13)	-1.38 (1.72)	-0.49 (2.04)	
R-square	0.25	0.13	0.09	0.13	0.10	0.07	

: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표 22 - 가중치 부여 이전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2/2)]

구분		의료	가사	교육	기타	
시기		-0.05 (0.09)	-0.10 (0.14)	0.36 (0.23)	0.00 (0.14)	-0.92^{***} (0.26)
집단		-0.18 (0.11)	0.20 (0.18)	0.17 (0.29)	-0.04 (0.18)	-0.58^{**} (0.26)
시기·집단		0.00 (0.15)	0.02 (0.26)	0.10 (0.41)	0.14 (0.25)	0.67 [*] (0.37)
경제	10분위 소득	0.14^{***} (0.02)	-0.02 (0.03)	0.11^{**} (0.05)	0.08^{***} (0.03)	0.17^{***} (0.04)
	공적 이전	0.01 (0.02)	0.05 [*] (0.03)	0.09 [*] (0.05)	-0.07^{**} (0.03)	0.08 [*] (0.04)
	근로	0.08 (0.09)		-0.18 (0.22)	-0.14 (0.13)	
인식	적정 생활비	0.22^{**} (0.08)	0.43^{**} (0.22)	0.98^{***} (0.34)	0.14 (0.21)	0.00 (0.31)
주거요인	주거 형태					
	가구 유형			0.46 [*] (0.23)	0.24 [*] (0.14)	0.16 (0.22)
	거주 지역	0.12^{**} (0.06)		0.07 (0.14)	0.16 [*] (0.09)	-0.25^{**} (0.13)
건강	만성 질환	0.22^{***} (0.08)	0.45^{***} (0.13)			0.67^{***} (0.19)
	장애		0.19 (0.23)			
	심리 건강		0.01 (0.01)			
인구통계	성별	-0.11 (0.08)	0.38^{***} (0.14)	-0.44 [*] (0.23)	0.10 (0.14)	-0.59^{***} (0.20)
	교육	0.04 (0.04)	0.15^{**} (0.07)	-0.12 (0.11)	-0.09 (0.07)	0.02 (0.10)
상수		1.74[*] (1.04)	-1.17 (1.67)	-7.56^{***} (2.79)	-1.59 (1.71)	3.77 (2.54)
R-square		0.25	0.14	0.10	0.11	0.18

: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Abstract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on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elderly

Jongseong, Lee

Department of Public Policy

Major in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has influence on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aged. To this end,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5th data (collected in 2013) and the 6th data (collected in 2015)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reatment group consisted of 65 years old people born in 1949 who received basic pension as of

2014 when basic pension was initially implemented while control group consisted of people born in 1950 who were the closest to the benefit group considering their age.

According to results of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treatment group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due to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it is believed that as for clothing expenses among detailed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ignificantly improved living standards of pensioners in treatment group but it is believed that as for housework service expenses,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ignificantly lowered living standards of pensioners in treatment group.

Next, according to an analysis on influence of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with control of influential factors on consumption expenditure after difference in differenc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t was found that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did not have significant change but that expenditure of clothing expenses and cultural expens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Considering that cultural expenses and clothing expenses are closely related to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and that they correspond to luxury goods with high income elasticity of demand, it seems that such featur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increase in expenditure of cultural expenses and clothing expenses. Meanwhile, as for food expenses,

housing expenses, expense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medical expenses, no change was observed on consumption expenditure. It is presumed that these consumption items did not have high income elasticity because they had high weight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fell under fixed expenditure. Namely, it is construed that income variation due to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but it preferentially had influence on part of consumption expenditure with high income elasticity. It maybe results from low wage level of 100,000~200,000 won basic pension and features of survey data 6 months after implementation.

Also, it was found that decile income and level of the optimal cost of living for the aged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most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As decile income increased,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food expenses, clothing expenses, housing expenses, cultural expenses, expense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ousework service expenses,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diture, and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which showed the outcome consistent with existing economic analysis that the higher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is, the higher level of income is. In addition, as level of the optimal cost of living for the aged increased, it was shown that probability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housing expenses, clothing expenses,

cultural expenses, expense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edical expenses, and housework service expenses became higher and that the higher desire for consumption expenditure expressed as the optimal cost of living, the more actual consumption expenditure amount increased.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es, it minutely investigated item-wise change in consumption expenditure including variable with high conceptual significance as a control variable. According to analysis resul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 was observed in cultural expense and clothing expense items, which proved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functioned as adequate policy means to achieve policy goal of improving life quality of the aged.

However, this study only reflected the effect of 6 months policy since implementation of basic pension due to limitation of investigation time; it converted variable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to equivalence scale for analysis due to limitation of analysis data composition; and, it has a limitation that it did not reflect detailed asset standard and income deduction in formation of control group due to insufficient data.

Key words: basic pension, consumption expenditure, public transfer income, cultural expenses, clothing expenses,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KReIS

Student ID: 2008-23386